

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” 며, “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,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,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” 고 말했다.

또한 그는 “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비록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들이니만큼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” 며, “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 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” 고 밝혔다.

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...업종별 세부지침 필요

이어 ‘제조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’ 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센터장은 “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” 며, “ESG 공시의무화가 도입되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,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” 고 말했다.

또한 이 센터장은 “현재 ESG 공시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” 며, “산업별 1,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Bottom Up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” 고 밝혔다.

다음으로 ‘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및 대응’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“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작성자 관점과 함께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” 며, “금융기관만의 작성자 관점 핵심이슈는 금융배출량(financed emission)*과 그린워싱(greenwashing)**이며, 사용자 관점 핵심이슈는 TCFD*** 지침의 기후 리스크(risk)와 기회(poortunity) 관련 기업정보 요구와 활용이다” 고 밝혔다.

* 금융배출량 :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

** 그린워싱 :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

*** TCFD(Task 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s) : 기후변환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
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기준 제시